

제22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8. 12. 11.(화) 16:00

2. 장 소: 대구사이버대학교 C.I.R

3. 위원출결사항

구분	인원	성명
참석위원	9명	이상기 위원장, 김영걸 부위원장, 송인욱 위원, 이옥분 위원, 김병춘 위원, 박인악 위원, 정재욱 위원, 임윤화 위원, 박선희 위원,
불참위원	0명	

- 배석자: 간사 도진우

4. 안 건

-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
- 2019학년도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
- 2019학년도 학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 간사: 재적위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나. 개회선언

- 위원장: 재적위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다. 심의사항

○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심의

- 위원장: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학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2차 추경예산	1차 추경예산	증 감	증 감 률
22,541,429	22,926,725	△385,296	△1.68%

2018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22,541,429천원으로 2018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385,296천원 감소하여 1.6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다.

간서명	위원	이상기	위원	정재욱	위원	김병춘
-----	----	-----	----	-----	----	-----

[수입예산 변경]	[지출예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수입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 전입 및 기부금 수입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 교육부대수입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 교육외수입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예산 조정 • 예산 절감에 따른 관리운영비 예산 조정 • 연구학생경비 예산 조정 • 교육외비용 예산 조정 • 투자와 기타자산 매입지출 예산 조정 • 고정자산 매입지출 예산 조정

○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

- 위원장: 상정 안건인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승인 요청 심의」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설명을 하다.

※ 2019학년도 학교비회계 사학연금 학교부담 예산현황

(단위: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	예산총액
교원	사학연금	115,737,000	292,088,000
	사학연금재해보상	8,547,000	
직원	사학연금	160,733,000	
	사학연금재해보상	7,071,000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관련법상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부담 여력이 없어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에 따라 대학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요청 심의」안건에 대하여 사립대학의 법인 현황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다.
- 참석위원전원: 각 위원이 관련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 의결하다.
-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승인 요청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2019학년도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2019학년도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상세 설명하다.

(단위:원)

구분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비고
사이버대학 평균	23,000	255,000	70,000	21개 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	20,000	200,000	70,000	

- 위원장: 2019학년도에는 대학에서 별도의 인상 요구가 없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2019학년도 등록금은

간서명	위원	이성기	위원	정재욱	위원	(2025)
-----	----	-----	----	-----	----	--------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참석위원전원: 참석위원 전원 동의·재청 및 찬성하다.
-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019학년도 등록금은 동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2019학년도 학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위원장: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2019학년도 학교비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해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학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증 감	증 감 륜
16,789,406	22,541,429	△5,752,023	△25.5%

- 교직원위원: 법인의 상황에 맞춰 총장검직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 등록금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학교 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상 등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설명하다. 등록금 납부 방법에 있어서 카드결제 의 의존도가 높아 카드수수료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카드수수료 지급을 줄이고 줄인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을 의견제진하다.
- 학생위원: 외부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입소문 등을 통한 재학생 위주의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휴대폰 어플 등의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해 줄 것을 의견제진하다.

○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 위원장: 위 안건을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상세 설명하다.

※ 잉여금 처리 원칙

- ◎ 2018학년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집행 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본예산에 포함 되지 않은 이월자금)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 사용방안 마련
- ◎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직접 교육비 활용
 -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교육용기자재 확충
 - 장학금 등 직접교육비
- ◎ 선급법인세, 임대보증금, 사업비 등 명시이월로 그 집행용도가 정해진 사업비는 제외

- 참석위원전원: 상정 안건에 대해 각 위원의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대구사이버대학교 '잉여금 처리 원칙(안)' 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합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
-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잉여금 처리 원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간서명 대표자 선임의 건
- 위 원 장: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건을 상정한 후,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

간서명	위원		위원		위원	
-----	----	--	----	--	----	--

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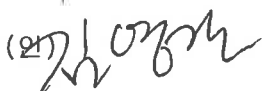






- 참석위원전원: 금회 위원회 출석 위원 중 이상기 위원장, 송인욱 위원, 정재욱 위원을 금회 등록금심의 위원회 간서명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재청 및 찬성으로 의결하다.
- 위 원 장: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상기 위원장, 송인욱 위원, 정재욱 위원을 금회 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의결함을 선언하다.

마. 폐회선언

- 이상과 같이 회의를 마치고 이상기 위원장이 17:00에 폐회를 선언하다.
- 위 원 장(이상기): 몇 년간 교직원의 처우가 동결되어 자칫 의욕상실로 이어질까봐 염려됨을 설명하다.
- 위 원 장(이상기): 5건의 상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하다.
- 참석위원 전 원: 참석위원 전원 동의·재청 및 찬성하다.
- 위 원 장(이상기):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12. 11.

위 원 장	이 상 기 (인) 
부 위 원 장	김 영 걸 (인) 
위 원	송 인 욱 (인) 
위 원	이 욱 분 (인) 
위 원	김 병 훈 (인) 
위 원	박 인 악 (인) 
위 원	정 재 욱 (인) 
위 원	임 윤 화 (인) 
위 원	박 선 희 (인) 